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79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박준태·김소희·김장겸

송언석 • 주진우 • 강대식

주호영 · 김상욱 · 박수민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적임.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수입 금지 범위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서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 였으므로,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도 이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 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관세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함(안 제6조제14호가목).
- 나.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 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 및 제20조제1항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식재산권"을 "「관세법」제235조제1항 각 호의지식재산권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4조의15, 제34조의17, 제34조의18, 제34조의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를 위반한 범죄
- 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14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가
발생하는 「관세법」, 「관	
세사법」,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	
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 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2 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 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 는 범죄,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 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 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 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 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의 용역거래 ·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 거래법 1 제8조제3항을 위 반한 범죄, 「외국환거래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 · 관계인에

「관세법」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u> </u>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범죄

나.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15. ~ 50.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
34조의15, 제34조의17, 제3
4조의18, 제34조의19, 「생
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
조, 제24조, 제24조의2를
위반한 범죄

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범
 <u>죄</u>

15. ~ 50. (현행과 같음)